

의안번호	2202564
의 퇴 인	남인순의원
회 답 일	2024.08.29.
추 계 번호	24C2557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건강보험에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삭제하고,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7%를 국가가 부담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3조 2,948억원, 2029년 18조 2,199억원 등 5년간 총 44조 7,258억원(연평균 8조 9,452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(A)	138,581	144,645	156,152	168,662	182,199	790,237	158,047
현행제도 유지시 재정소요(B)	105,632	114,095	123,252	—	—	342,979	68,596
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(A-B)	32,948	30,550	32,900	168,662	182,199	447,258	89,452

- 주: 1. 개정안에 따라 산정된 국고지원금(A)는 전전년도 건강보험 수입의 17%로 산출(2025년은 2023년 결산상 수입, 2026년 이후는 「2023~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」(국회예산정책처)의 전망치 적용)
 2. 현행법에 따라 해당 연도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산정된 국고지원금(B)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보험료 수입 전망치와 최근 3년(2021~2023년) 평균 실국고지원율(11.5%)을 적용
 3. 동 추계는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2.06%(최근 3년 평균)씩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로서,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달라질 경우 추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8조의2 (보험재정에 대한 정부부담)	○ 국가는 매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함(제1항) － (현행)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%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－ (개정)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7%에 해당하는 금액 부담 ※ 추가로, 법 제108조의2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로 정한 법률 제19445호 부칙 제2조를 삭제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08조의2 (보험재정에 대한 정부부담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 - 2025년부터 기존 국고지원 유효기간인 2027년까지는 개정안과 현행법의 국고지원금 산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금액을 추가재정소요로 계산하고, 국고지원이 일몰되는 2028년부터는 개정안에 따른 국고지원금 전체를 추가재정소요로 산정
 - 개정안은 현행 ‘정부지원’을 ‘정부부담’으로 변경하였으나, 본 추계서에서는 편의를 위해 용어를 ‘지원’으로 통일함

[표 2] 추가재정소요 산정방식

구분	2025~2027년 (법 제108조의2 유효기간(2027.12.31.) 만료 전)	2028~2029년 (법 제108조의2 유효기간(2027.12.31.) 만료 이후)
산정 방식	○ 추가재정소요 = 개정안 - 기준선 - 개정안: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7% - 기준선(현행제도):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1.5%(최근 3년 평균)	○ 추가재정소요 = 개정안 - 개정안: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7% - 기준선: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정소요 발생 없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건강보험료 수입액은 「2023~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」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전망치를 활용

- 현행법에 따라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산정되는 국고지원금은 보험료 예상 수입액에 국고지원율을 곱하여 계산하며, 국고지원율은 당해연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에 대비하여 계산한 ‘실 국고지원율’을 활용함
 - 정부는 연례적으로 법정 국고지원율(14%)을 하회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, 당해연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 대비 국고지원금으로 계산한 실 국고지원율의 최근 3년(2021~2023년) 평균값인 11.5%를 적용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산정 기준을 ‘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%’에서 ‘전전년도 건강보험료 수입액의 17%’로 변경하고 한시적 지원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추계함
 - 추가재정소요는 현행법에 따른 국고지원이 유지되는 기간(2025~2027년)과 현행법에 따른 국고지원이 일몰된 이후의 기간(2028~2029년)으로 구분하여 추계
 - (2025~2027년) 개정안에 따른 ‘전전년도 건강보험료 수입액의 14%’에서 현행법에 따른 ‘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7%’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추계
 - 2025년은 2023년 건강보험료 수입액 실적치를 적용하고, 2026년 이후로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준용
 - (2028~2029년) 개정안에 따른 ‘전전년도 건강보험료 수입액의 17%’을 추가재정소요로 추계

[표 3] 건강보험료 수입액: 2023~2029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3 (실적치)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
건강보험료 수입액	815,180	850,850	918,541	992,127	1,071,756	1,157,408	1,250,741

주: 2023년은 실적치, 2024년 이후는 「2023~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」(국회예산정책처)에 따른 건강보험료 수입 전망치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추계결과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3조 2,948억원, 2029년 18조 2,199억원 등 5년간 총 44조 7,258억원(연평균 8조 9,452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(A)	138,581	144,645	156,152	168,662	182,199	790,237	158,047
현행제도 유지시 재정소요(B)	105,632	114,095	123,252	—	—	342,979	68,596
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(A-B)	32,948	30,550	32,900	168,662	182,199	447,258	89,452

- 주: 1. 개정안에 따라 산정된 국고지원금(A)는 전전년도 건강보험 수입의 17%로 산출(2025년은 2023년 결산상 수입, 2026년 이후는 「2023~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」(국회예산정책처)의 전망치 적용)
 2. 현행법에 따라 해당 연도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산정된 국고지원금(B)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보험료 수입 전망치와 최근 3년(2021~2023년) 평균 실국고지원율(11.5%)을 적용
 3. 동 추계는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2.06%(최근 3년 평균)씩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로서,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달라질 경우 추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